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314,994,160	249,449,825
일반회계		7,473,096,253	224,192,888
특별회계		841,897,907	25,256,937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841,897,907	25,256,937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특별회계	4,221,000	126,630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28,021,152	840,63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97,889,796	14,936,69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471,099	164,133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0,137,372	304,121
	소방특별회계	295,993,342	8,879,800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	164,146	4,924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8,805,98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차입 한도액은 74,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